

# 국 민 안 전 처

## 시 정 요 구

제 목 국고보조금 정산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양양군, 정선군, 양구군

내 용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강원도 양양군 및 2개 군에서는 [표 1]과 같이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국고보조금 사업 현황

사업지구명	사업량	도금액 (백만원)	계약체결일	도금업체	비고
○○○리	영구 앵커 40공 등	464	2012.3.28.	○○○○(주) (○○○)	양양군
○○운동장위	계단식 옹벽 234m 등	221	2015.5.4.	(주)○○○○ (○○○)	정선군
○○○지구	계비온 옹벽 425m 등	303	2015.4.3.	○○○○ (○○○)	양구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3개월이내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양군 및 2개 군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을 완료한 후 집행잔액 중 반납대상인 692백만원(이자 포함)을 반납하지 않았다.

[표 2] 국고보조금 미반납 현황

시·군	사업명(정비사업)	사업비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잔액 (백만원)	반납액+이자 (잔액의 50%)	비고
양양군	○○○리	8,821	7,680	1,141	684	
정선군	○○운동장위	400	397	3	3	
양구군	○○○지구	650	640	10	5	

**조치할 사항**                    양양군수, 정선군수, 양구군수는

○○○○·○○운동장위·○○○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 총 692백만원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